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. 12. 23 선고 2014가단575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4. 12. 23.

주 문

1.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D 대 896m² 중,
가. 별지 감정도(2) 표시 1 내지 15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시멘트 블록조 주택 및
창고 93.8m²를 철거하고,
나. 별지 감정도(1) 표시 철제대문(높이 1.8m. 길이 3.4m), 블록담장((높이 1.8m. 길이 3m), 골함석
울타리(높이 1.8m. 길이 13m)를 철거하고,
다. 위 가.항 기재 대지 93.8m²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.

판사송선양

별지